

당첨자 계약 안내

원종 휴먼빌 클라츠

■ 정당 계약 일정

계약 일정	계약 장소	문의 전화	비고
2025.05.20.(화) ~ 05.22.(목) 3일간 오전 10시 ~ 오후 4시	원종 휴먼빌 클라츠 건본주택 (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-38)	1661-7747	

※ 당첨자 계약 일정은 주택 소유 실태 및 전산 검색 소요 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제출 서류 및 전산 검색 결과 적격자(정당 당첨자)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, 부적격자는 부적격자 기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확인된 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■ 계약 시 구비 서류 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[2025.04.18.]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.

구분	서류 유형		해당 서류	확인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		
공통	<input type="radio"/>		자격 검증 서류	당첨 유형별 자격 검증 서류 일체 ※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간 내 모두 제출한 경우 생략
		<input type="radio"/>	추가 개별 통지 서류	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요구한 서류
	<input type="radio"/>		신분증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(2020.12.21. 이후 신규 발급 여권 불가) ※ 재외동포 : 국내가소신고증/ 외국인 : 외국인등록증 ※ 온라인(모바일) 신분증 불가
	<input type="radio"/>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용도 : 주택공급계약용(본인 발급분) ※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한 경우 생략
	<input type="radio"/>		인감도장	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일치 /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(제3자 대리인 계약 불가)
	<input type="radio"/>		계약금 입금증	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서(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)
	<input type="radio"/>		정부수입인지(종이문서용)	(계약자 부담 인지세) 공급계약 : 75,000원 ※ 수입인지 발급 방법 등 별도 안내문 참고
제3자 대리 계약 시 추가	<input type="radio"/>		계약자 인감증명서	용도 : 주택공급계약 위임용(계약자 본인 발급분) ※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<input type="radio"/>		계약자 인감도장	인감증명서와 날인 대조
	<input type="radio"/>		위임장	건본주택 비치 / 계약자 인감도장 날인
	<input type="radio"/>		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/ 상기 계약자 신분증 유의사항 참고하여 구비

아파트 분양대금,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계좌가 각각 상이하므로, 이 점 유념하시어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.

■ 아파트 계약금 및 납부 계좌 안내

(단위 : 원)

구분	타입	1차 계약금(계약 시)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
분양대금	46,47	15,000,000	* KB 국민은행	393301-04-113629	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
	59A,B,C	20,000,000			

■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 계좌 안내

(단위 : 원, 부가가치세 포함)

타입	발코니 확장 금액	계약금 10% (계약 시)	금융기관	계좌번호	예금주
46	5,000,000	500,000	* KB 국민은행	393301-04-113632	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
47	4,800,000	480,000			
59A	6,200,000	620,000			
59B	5,600,000	560,000			
59C	5,600,000	560,000			

※ 입금 시 당첨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예시 : 101동 801호 당첨자인 경우 입금자명을 "0101-0801"으로 기재

※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, 건본주택 유선 및 방문 상담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추가 선택품목(유상옵션) 계약은 별도 일정을 지정하여 안내 예정입니다.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원종 휴먼빌 클라우드

「인지세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동산 분양계약서(분양권 전매 계약서 포함)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며,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약관에 따라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 ½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과세 대상	* 관련 법령 : 「인지세법」 제1조, 제3조 제 1항 제1호 및 제 8조 - 부동산 분양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입니다. - 계약 당시 자간 서명날인을 마친 때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납부방법 및 기한	- 분양계약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
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방법	- 수입인지 사이트(e-revenuestamp.or.kr)에서 구입 -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 및 보관

※ 인지세 납부 이후 출력된 전자수입인지 원본의 변경(소인 등) 시, 인지세를 재납부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인지세 납부 금액

구분	기준 금액	총 인지세	계약자 부담분	비고
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(분양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)	1,000만원 ~ 3,000만원	20,000원	-	-
	3,000만원 ~ 5,000만원	30,000원	-	-
	5,000만원 ~ 1억원	70,000원	-	-
	1억원 ~ 10억원	150,000원	75,000원	전 타입
	10억원 초과	350,000원	-	-

□ 전자수입인지 구매방법 안내

①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(<https://www.e-revenuestamp.or.kr>) 접속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②



③



④



전자수입인지는 **출력물이 원본이므로 1회만 출력 가능하며, 재출력은 절대 불가**하므로, 사전에 시험 인쇄를 통하여 인쇄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출력 버튼 클릭 시 새창으로

전자수입인지정보와 출력 가능한
프린터 목록을 제공합니다.

출력 가능한 프린트를 확인하신 후

[출력] 버튼을 클릭하시면

수입인지 출력이 가능합니다.

